

순천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운영규정

제정 2019. 7. 17.

개정 2020. 3. 1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5조의16에 따라 순천대학교 교육혁신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교육혁신본부(이하 “혁신본부”이라 한다)에는 교양교육원, 비교과교육센터, 교육질관리센터, 교수학습개발센터와 교육지원실을 두며, 필요한 경우 각 센터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20. 3. 11.)

② 교육혁신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혁신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원장 및 각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본부장을 보좌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20. 3. 11.)

④ 혁신본부에는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, 조교, 연구원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20. 3. 11..)

⑤ 연구원은 센터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⑥ 교육지원실에는 실장과 직원을 두고, 혁신본부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
제3조(하부조직) ① 삭제 2020. 3. 11.

② 삭제 2020. 3. 11.

③ 삭제 2020. 3. 11.

제4조(기능) 혁신본부의 교양교육원 및 각 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 (개정 2020. 3. 11..)

1. 교양교육원은 교양 교육 운영 지원 및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행

2. 비교과교육센터는 비교과 교육 운영 총괄 및 연구·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

3. 교육질관리센터는 교양, 전공 및 비교과 교육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

4.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법 연구·개발 및 교수의 교육 역량 향상,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혁신본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, 위원은 교무처장, 기획처장, 교양교육원장, 비교과교육센터장, 교육질관리센터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교육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0. 3. 11..)
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혁신본부 운영 규정 개정 및 폐지

2. 혁신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3. 혁신본부 사업계획 및 예·결산 (개정 2020. 3. 11..)
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(개정 2020. 3. 11..)

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혁신본부 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용한다.

제6조(위원 임기) 위촉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재정) 혁신본부의 재정은 대학회계, 사업비 및 그 밖의 재원으로 한다.

제8조(운영 세칙) 그 밖에 혁신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<2019. 7. 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 교육혁신단 운영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<2020. 3. 11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